

2017년 노원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노원구청장(인)

- ◆ 우리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29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432억원)보다 867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2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45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9억원입니다.
- ◆ 우리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79%(순세계잉여금 제외시 17.7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89%(순세계잉여금 제외시 46.86%)입니다.
- ◆ 우리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는 크지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won.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문성수(☎2116-3164)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노원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7,299	6,886	413	6,432	6,083	349
	세 출 예 산	7,299	6,886	413	6,432	6,083	349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0.79	19.21	1.58	30.09	32.93	△2.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9.89	47.64	2.25	56.59	55.37	1.2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3	△11	△2	△14	3	△1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사항 없음(공시 제외항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행자부 자치단체 유형구분 중 '구-(1)'에 해당]

*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2016 재정분석종합보고서(행정자치부)의 기초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에 의함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노원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9,926	688,586	0	14,997	26,34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7,535	573,019	637,255	694,947	729,92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합 계	488,267	100	532,920	100	596,158	100	652,138	100	688,586	100
지방세	60,503	12.4	59,690	12.2	62,258	10.4	66,342	10.2	68,951	10
세외수입	48,609	10	32,200	6	32,353	5	48,954	7.5	53,330	7.7
지방교부세	4,898	1	5,790	1.1	6,036	1	6,223	1	7,535	1.1
조정교부금 등	142,506	29.1	151,681	28.5	163,414	27.4	179,159	27.5	192,864	28
보조금	231,751	47.5	274,008	51.4	322,097	54	341,460	52.4	345,050	5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9,551	1.8	10,000	1.7	10,000	1.5	20,855	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노원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9,926	688,586	0	14,997	26,34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7,535	573,019	637,255	694,947	729,92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합 계	488,267	100	532,920	100	596,158	100	652,138	100	688,586	100
일반공공행정	42,674	8.7	35,965	6.8	34,897	5.9	26,134	4	30,441	4.4
공공질서및안전	740	0.2	661	0.1	667	0.1	734	0.1	786	0.1
교육	12,604	2.6	13,412	2.5	13,593	2.3	13,378	2.1	16,878	2.5
문화 및 관광	9,096	1.9	8,113	1.5	10,432	1.8	18,541	2.8	29,386	4.3
환경 보호	14,953	3.1	12,969	2.4	15,001	2.5	27,233	4.2	30,340	4.4
사회 복지	270,357	55.4	320,677	60.2	371,544	62.3	400,314	61.4	400,691	58.2
보건	13,405	2.8	14,103	2.7	17,207	2.9	18,827	2.9	19,198	2.8
농림해양수산	0	0	0	0	0	0	0	0	0	0
산업·중소기업	1,315	0.3	641	0.1	1,226	0.2	933	0.1	923	0.1
수송 및 교통	4,479	0.9	4,221	0.8	4,169	0.7	3,823	0.6	7,848	1.1
국토및지역개발	4,500	0.9	4,088	0.8	4,571	0.8	8,803	1.4	10,453	1.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317	1.1	5,330	1	5,903	1	6,130	0.9	6,218	0.9
기타	108,827	22.3	112,739	21.2	116,948	19.6	127,289	19.5	135,423	1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65,729	770,114	783,241	796,703	816,976	3,932,763	1.60
자 체 수 입	130,079	121,922	124,568	127,243	130,058	633,870	0.00
이 전 수 입	584,326	603,171	613,536	624,225	641,213	3,066,471	2.30
지 방 채	4,399	0	0	0	0	4,339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985	45,021	45,138	45,235	45,705	228,084	△0.70
세 출	765,729	770,114	783,241	796,703	816,976	3,932,763	1.60
경 상 지 출	160,139	162,733	165,282	168,541	171,761	828,456	1.80
사 업 수 요	605,590	607,381	617,959	628,162	645,215	3,104,307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712,676	749,929	37,253	5.23%
노원구	694,947	729,926	34,980	5.03%
공사공단	16,297	18,596	2,299	14.11%
출자출연	1,432	1,406	△26	△1.8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노원구 서비스공단
- ▶ 출자출연기관(1개) : 노원교육복지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79 (17.76)	688,586 (688,586)	143,136 (122,281)	545,450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노원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94 (15.59)	740,956 (740,956)	147,749 (115,497)	593,207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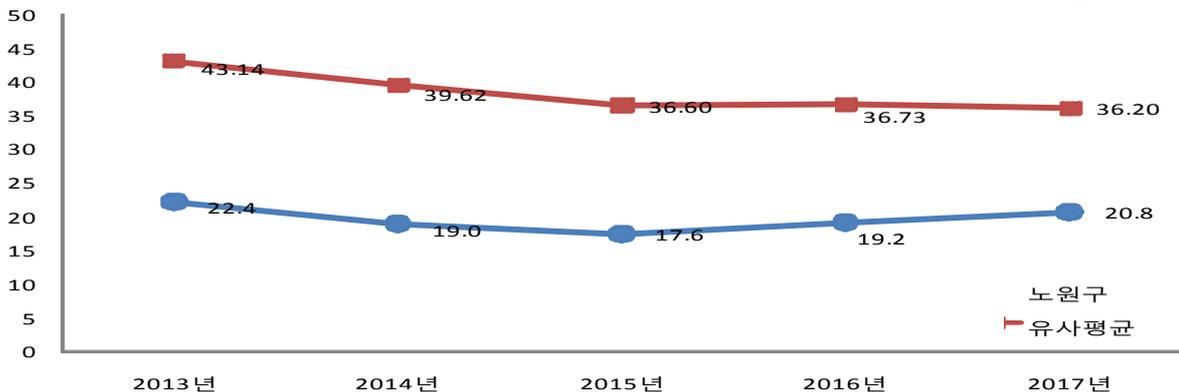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2.35	19.04 (17.24)	17.55 (15.87)	19.21 (17.68)	20.79 (17.76)
최종예산	19.91	19.20 (15.42)	17.62 (13.75)	19.94 (15.5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특성과, 국가 주도의 복지예산(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에
인하여 재정자립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 확충노력을 경주한 결과 재정자립도의 하락폭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9.89% (46.86)	688,586 (688,586)	343,536 (322,680)	345,050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노원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6.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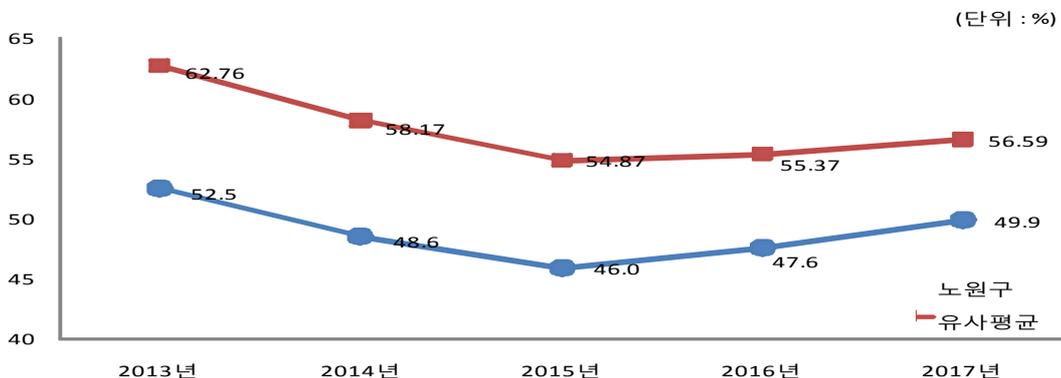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11 (42.53)	740,956 (740,956)	347,395 (315,143)	393,561	0	0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2.54	48.58	45.97 (44.29)	47.64 (46.11)	49.89 (46.86)
최종예산	48.53	47.38	44.63 (40.75)	46.88 (42.5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특성과, 국가 주도의 복지예산(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에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 확충노력을 경주한 결과 재정자주도의 하락폭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77,176	703,146	2,140	5,463	3,323	27,967	706,469	△29,293	△1,326
일반회계	667,731	687,935	0	0	0	20,855	687,935	△20,204	651
기타 특별회계	7,801	13,062	42	1,893	1,851	7,112	14,913	△7,112	0
기 금	1,644	2,149	2,098	3,571	1,472	0	3,621	△1,977	△1,97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통합재정수지의 **세입의 경우 보전재원수입(순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하며,
 지출의 경우 회계간 거래 및 자치단체간 거래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위 표 세입(A)에는 보전재원수입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출(B)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이 공제되었습니다.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순세계잉여금 미포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4,212	△13,256	△20,524	△20,524	△29,293
통합재정수지 2	6,616	266	2,431	△1,131	△1,326

- ☞ 노원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드러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공제된 수치로 표현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세입증대 및 지출절약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의 적자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일반회계 흑자) 통합재정수지2의 적자는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용자지출이 포함된 적자입니다. 기금의 용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가 향후 회수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그 자체로 재정운용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노원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18,060	751,921	2,401	5,114	2,713	41,645	754,634	△36,574	5,071
일반회계	708,704	733,914	0	0	0	32,252	733,914	△25,210	7,042
기타 특별회계	7,590	15,614	79	1,574	1,495	9,393	17,109	△9,519	△126
기 금	1,766	2,393	2,322	3,540	1,218	0	3,611	△1,845	△1,845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통합재정수지의 세입의 경우 보전재원수입을 공제하며,
 지출의 경우 회계간 거래 및 자치단체간 거래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위 표 세입(A)에는 보전재원수입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출(B)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이 공제되었습니다.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73	△5,329	△27,053	△26,549	△36,574
통합재정수지 2	7,163	5,995	△214	2,672	5,071

☞ 노원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드러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공제된 수치로 표현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세입증대 및 지출절약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16년 최종예산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노원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15,282
여성정책추진사업	15	4,4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0,4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98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노원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88,586	500	3

▶ 201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00,000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등산로 입구 정비로 토사유출, 환경걱정 끝! (상계1동 은빛아파트 뒷길)	30,000	
공원녹지과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어르신 숲속 힐링프로그램 (불암산 생태학습관 자락길)	20,000	
자원순환과	CCTV 하나로 동네가 편안하고 깨끗해져요.(상계3.4동)	50,000	
행정지원과	구청지하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노원구청 지하 헬스장)	30,000	
공원녹지과	녹지공간 정비(상계1동 대림아파트 노인정~계단 사이)	50,000	
건축과	꿈이 자라는 길 벽화 그리기(월계2동 신계초교 담장)	7,000	
공원녹지과	공원 화단 내 바둑벤치 조성(중계2.3동 중계근린공원)	10,000	
건축과	견고 싶은 벚꽃길 조성(벽화그리기) (상계9동 청운학당~보람2단지 사잇길)	16,000	
자치행정과	하계2동 악기 및 밴드 연습실 조성(하계2동 주민센터)	15,000	
자원순환과	당현천변 화장실 및 표지판 설치(중계2.3동)	2,000	
토목과	지하보도 지붕을 만들어 주세요!! (용화지하보도)	50,000	
공원녹지과	상계역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안내판 설치 (상계역 1번출구)	400	
평생학습과	책과 함께 놀아요~ 재미있는 우리 마을 공원(중계1동)	7,600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용(차량용 블랙박스) CCTV 설치 (상계2동)	3,000	
공원녹지과	우이천 차 없는 거리 간이무대 설치 (월계2동 롯데캐슬루나 차 없는 거리)	30,000	
자치행정과	가끔 사용하는 공구, 사지 말고 빌려주세요! (공릉1동 주민센터)	5,500	
공원녹지과	비석골 근린공원 내 노후 휴게시설 교체 (월계2동 비석골 근린공원 내)	25,000	
공원녹지과	Welcome to 노원골, 동막골 숲속 오리엔테어링 (서울둘레길 1코스)	12,500	
자치행정과	공릉2동 청사 뒷마당 통행로 정비(공릉2동 주민센터)	20,000	
체 육 청소년과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부모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10,000	
자치행정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주민센터 만들기 프로젝트 (상계9동 주민센터)	5,000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상계1동)	1,800	
공동주택 지원과	상계수락한신 아파트 패션재능 기부공간 조성	3,000	
공원녹지과	학교 등굣길, 담장에 녹색 옷을 입혀요! (중계주공6,7단지 방음벽 및 담장)	20,000	
생활건강과	생명사랑 생명존중 음악회	30,000	
공원녹지과	만남의 공간, 공릉가로공원 정비	25,000	
체 육 청소년과	나는 아티스트다!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공유사업)	11,200	
문화과	101가지 노원이야기 책 출판	10,000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노원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3	158	148	703,583	668,992	34,591
감사담당관	1	1	4	5	193	176	17
행정지원국	1	9	27	28	159,348	136,937	22,411
기획재정국	1	7	23	23	16,589	16,206	383
교육복지국	1	13	32	23	418,281	414,138	4,143
도시계획국	1	5	19	18	13,383	9,376	4,007
교통환경국	1	10	31	29	60,640	58,826	1,815
보 건 소	1	7	20	21	31,029	29,131	1,898
의회사무국	1	1	2	1	4,120	4,202	△8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79	49.89	58.19	16.32	63.92	82.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8,100	78,1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19,059	1,105,156	△13,90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9,800	119,8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16,000	116,000	0
	의원국외여비	68,250	68,250	0
지방보조금		8,833,455	7,232,376	△1,476,571
통장활동 보상금(706명)	수당	200	200	0
	상여금	400	400	0
	회의참석수당	50	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인당)		1,492	2,000	508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 없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 반영함에 따라
공시제외항목입니다.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 없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 반영함에 따라
공시제외항목입니다.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 없음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 없음